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8. 31.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82호로 2021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시행 '21. 6. 9.) 및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주소정보안내도 등의 광고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사.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아.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1. 7. 15. ~ 8. 4.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시행 '21. 6. 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도로명주소, 기초번호,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를 확대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 정보안내판 등에 광고를 할 때에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해촉 등 주소정보위원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 가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 관련 각종 업무를 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시행 '21. 6. 9.) 및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등에 적합하게 개정한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도로명주소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통신 관련 시설

③ ~ ⑥ (생략)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 ④ (생략)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 ③ ~ ⑥(생략)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생략)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 ⑥ (생략)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생략)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 ⑫ (생략)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①~③ (생략)

④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① ~ ⑤ (생략)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0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판을 교부해야 한다.

③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사물주소판이 훼손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해야 한다.

④ ~ ⑥(생략)